

대형마트 · SSM에 대한 영업제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 희 은¹⁾ | 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장

1. 유통업계의 Hot Issue 영업제한!

아래의 영업제한 관련 주요 언론기사에서 보듯이, 최근 유통업계에서 거의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가장 뜨거운 이슈(Hot Issue)가 있다. 그것은 금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주요한 화두 중의 하나인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것으로 아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규정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에 대한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대형마트)과 준 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청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장으로 재직중임. 저서로는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출판사 탐북스)」가 있음.

아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대형유통기업들의 반발과 취소소송 제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재(再)개정 등²⁾으로 인해 영업제한처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주민 등 모든 국민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영업제한 관련 주요 언론기사〉

- 與도 野도 대기업 때리기...대형마트 규제법안만 14개(동아, '12.9.14)
 - 경제민주화에 갇힌 국회
- '고강도 영업규제법' 발의, 대형마트·SSM 떨고 있다(세계/국민, '12.8.17)
 - 월 4일 휴일 영업규제 등 유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 내달 정기국회 심의 거쳐 10월 부터 본격 시행 예상, 유통업계 내수위축 “반발”, 소상공인들 “환영” 분위기
- 재래시장 상인 37% “대형마트 규제 때 매출 상승”(서울, '12.8.13)
 - “5~10% 증가했다” 44.4%, 골목상인들도 “효과” 47.2%, 지속적인 후속대책 필요
- '쇼핑센터 위장' 대형마트도 규제(한겨레, '12.7.18)
 - 서울시 '유통법 개정안' 정부에 건의, “영업규제 조례” 피해가기 차단 나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SSM에 대한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와 서울시의 영업제한 관련소송 및 조례 개정현황, 영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영업제한에 관한 서울시 실태조사결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대형마트 등의 매출액만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할 뿐 중소기업이나 전통시장 등 중소기업들의 매출 증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³⁾

2) 대형유통기업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영업제한제도가 헌법에 규정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3)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월 2회 휴일영업을 규제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정부용역 조사결과가 나왔다(연합뉴스, '12.9.12).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제한의 실제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지난 6월에 실시한 ‘중소유통업체 실태조사결과’⁴⁾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영업제한의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결과

먼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22.2%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1〉 의무휴업제의 도움 여부

구분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안됨
도움 정도(%)	17.0	33.7	27.1	17.3	4.9

다음으로 매출액 증감정도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제 실시 이후 47.2%가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0.8%는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2〉 매출액 증가 여부

구분	증가	변화 없음	감소
매출액(%)	47.2	52.0	0.8

특히, 슈퍼마켓은 49.2%가 ‘증가했다’고 응답하고, 생선·야채·정육 등 기타 점포는 37.8%가 ‘증가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의무휴업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은 슈퍼마켓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점포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39.9%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점포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86.1%가 ‘증가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점포면적이 넓을 경우 의무휴업제에 따른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형마트·SSM과의 거리가 500m 미만인 경우 52.9%가 ‘증가했다’고 응답하고, 거리가 1km 이상인 경우 41.5%가 ‘증가했다’고 응답함으로써 대형마트 등과의 거리가

4) 이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시가 운영하는 39명의 슈퍼닥터를 통해 519개의 슈퍼마켓 등 중소기업체 630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가까운 경우 의무휴업제의 이익이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매출액 증가정도에 대해서는 43.6%가 ‘10% 미만’ 증가했다고 응답하였고, 40.7%는 ‘10~20%’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⁵⁾

〈표 3〉 매출액 증가정도

구분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증가 정도(%)	43.6	40.7	10.6	2.6

고객 수 변화와 관련해서는 13.4%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응답하였고, 36.4%는 ‘의무휴업일에만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49.8%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4〉 고객 수 변화 여부

구분	전반적 증가	의무휴업일만 증가	변화 없음	감소
변화 정도(%)	13.4	36.4	49.8	0.5

의무휴업제의 지속적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87.3%가 ‘확대 실시 및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 지속적 시행 여부

구분	확대 실시	지속 시행	상관 없음	폐지
비율(%)	50.3	37.0	12.5	0.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로 인한 개별점포의 영업전략에 대해 질문한 결과, 46.3%가 ‘친절하게 대한다’, 21.1%가 ‘적극적인 세일방법을 찾는다’, 10.4%가 ‘새로운 상품을 추가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6〉 영업전략 여부

친절 응대	적극 세일	신상품 추가	신경쓰지 않음	기타
46.3%	21.1%	10.4%	19.4%	2.8

5)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영업제한으로)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해 희망을 잃어가던) 영세 상공인들에게 다시 한 번 해보자라는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말한다(문화저널 21, '12.9.14).

(2) 영업제한 관련 주요 건의사항

영업제한 관련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① 의무휴업일을 현행 ‘2번’에서 ‘4번’으로 “확대”⁶⁾, ② 중형마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를 영업제한대상에 추가, ③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⁷⁾ 조기가동을 통한 물품 저가공급, ④ 전통시장 축제 등 홍보 활성화 지원, ⑤ 공용주차장 확보 등을 통한 주차불편 해소, ⑥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 등이 있다.

3. 영업제한 소송 및 조례 개정현황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2일 이러한 실제적 효과가 있는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제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대형유통기업) 승소판결을 하면서 원고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 강동·송파구의 영업제한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12.6.22)
 - 조례의 위법 :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
 - 절차상 하자 : 대형마트 등에게 영업제한에 대한 사전통지만 하고 의견 제출기간(10일 이상)을 부여하지 않아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대상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행정절차법」 위반

그러나 법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고 있어, 그 처분의 취지 등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 필요성 등 영업제한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⁸⁾ 이하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영업제한처분에 대해 대형유통기업이 제기한 소송현황과 자치구의 조례 개정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6) 2012년 10월 현재 의무휴업일을 현행 월 2회에서 3~4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 15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용섭, 이종걸, 이춘석 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7) 금년 3월에 서초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에 건립된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이후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8) 강동·송파구의 영업제한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2.6.22선고 2012구합11676 사건)

(1) 소송현황

2012년 10월 현재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를 제외⁹⁾한 강동·송파구 등 24개 자치구에 영업제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이 제기되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 특히, 강동·송파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심(서울행정법원)에서 대형유통기업(원고)이 승소한 후 강동·송파구가 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 있고, 다른 22개 자치구는 1심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 조례 개정현황

2012년 10월 15일 현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동·강서구 등 19개구에서 조례를 개정·공포하였고, 광진·성북 등 5개구에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서초구는 입법예고 중이다. 특히 강서구는 지난 10월 8일부터 영업제한을 재개하였다. 즉, 전 자치구에서 법원이 판시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늦어도 11월까지 조례 개정 후 영업제한이 재개될 예정이다.

〈표 7〉 조례 개정현황(2012. 10. 15 현재)

합계	영업제한 처분	공포	의회 상정	입법예고
25개구	1개구 강서	18개구 강동, 강북, 관악,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5개구 강남, 광진, 노원, 성북, 송파	1개구 서초

4. 영업제한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에서는 영업제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업제한제도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지난 7월 17일에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9) 용산구는 영업제한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영업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

있다.¹⁰⁾ 그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형마트 관련 영업제한대상의 합리성 제고

먼저, 영업제한대상이 대규모점포 중 일반 대형마트¹¹⁾로 한정되어 대형유통기업의 편법등록·운영과 대형마트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대규모점포 등록은 점포의 소유 및 운영형태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할 수 있다는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¹²⁾에 따라 아래 <표 8>에 있는 대형마트는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업제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표 8> 영업제한에서 제외되는 대형마트

구 분	대규모 점포명	주 소	입점 대형마트
백화점	NC 백화점	강서구 등촌동 689	김스클럽마트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I'PARK 복합쇼핑센터	용산구 한강로 3가 40-999	이 마 트
	김포 Sky Park	강서구 방화동 886	롯데마트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이 마 트
	가든 파이프톨	송파구 문정동 292 외 29필지	이 마 트
	홈플러스테스코(주) 목동점	양천구 목1동 919-7	홈플러스

둘째, 대규모점포 등록제로 인해 대형유통기업의 대형마트 편법등록 및 편법변경등록 신청시에도 행정관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대규모점포 개설시 “실질”은 “대형마트”인데도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업태가 “대형마트”임에도 이를 “쇼핑센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업태를 변경등록하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셋째, 규제범위가 대형마트 전체인지 또는 대형마트에 있는 영세 개별 사업자는 제외되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미용실·약국 등 대형마트에 입점한 영세 사업자도

10) 의무휴업일을 현행 월 2회에서 3~4일로 확대하는 등 영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용섭, 이종걸, 이춘섭 의원 등에 의해 2012년 10월 현재 약 15건이 발의되어 있다.

11) 이는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와 달리, 독립된 건물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일반적인 대형마트를 의미한다.

12) 대규모점포 등록은 점포의 소유 및 운영형태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할 수 있다(홈플러스 질의, 지식경제부 회신, '09.9.25)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첫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영업제한대상에 추가하고, 둘째, 대형마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점해 있는 약국, 미용실, 음식점 등 영세한 개별사업자는 영업제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국회에 건의하였다.

(2) SSM에 대한 영업제한범위 개선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체인화 편의점이 SSM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업규제의 형평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즉, 일부 대형유통기업이 SSM에 대한 영업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체인화 편의점’을 개설하여 “슈퍼마켓식”으로 편법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65㎡ 이상의 체인화 편의점도 SSM에 포함하도록 건의하였다.

(3)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인 경우 영업제한 자동 면제조항 개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나 SSM의 농수산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1% 이상인 경우 자동적으로 영업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판매실적을 유통기업이 제출한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행정 신뢰성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¹³⁾

또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인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중소유통업자의 매출까지도 하락한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풀어달라는 중소유통업체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¹⁴⁾

서울시에서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영업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자와 중소유통업자의 상생협력이

13) 2012년 9월 현재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업체는 총 19개이며, 이 중 13개 업체는 영업제한이 면제되고 있으며, 6개 업체는 영업제한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14) 이러한 예로는 광진 더샵스파시티 내 이마트, 수유시장내 롯데슈퍼, 중구 롯데캐슬베네치아 내 이마트 등이 있다.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과의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영업제한에서 제외되도록 건의하였다.

(4) 과태료 부과규정의 명확성 및 합리성 제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과태료 부과규정이 포괄적으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처벌이 필요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영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즉, 대형마트의 길거리 등 영업장 외 영업행위나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형마트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쇼핑센터 등으로 등록된 대형마트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대형마트를 쇼핑센터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공개공지 등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 과태료 부과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상거래질서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즉, 공개공지 등 영업장외 영업행위나 내·외부통로 및 계단·비상구·소방시설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대형마트를 쇼핑센터로 등록하는 등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맞지 않게 허위등록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해 주도록 건의하였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상생협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형마트·SSM에 대한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제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영업제한조례의 위법성과 영업제한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강동·송파구의 영업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인용한 법원 역시 영업제한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필요성 등 영업제한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다. 즉,

영업제한제도는 실효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 보호제도라는 사회적 합의¹⁵⁾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공감 차원을 넘어 실제 경제생활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영업제한제도 이외에도 중소기업물류센터 건립·운영, 생계형 자영업자 보호·육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하기 전에 입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중기청의 사업조정권한을 시·도로 이양해 시·도지사의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소기업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2심제’ 도입방안 등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 물류센터 사진(서초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표 9〉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현황

연번	제 목 (내용)	소관부처	관련법령
1	○ SSM 사전입점·확장 예고제 신설	지경부, 중기청	상생법
	○ 대규모점포 등 출점지역 조정권고제 신설		
2	○ 사업 조정권한 시·도지사 이양 및 2심제 도입	"	"
	○ 사전조사권 시·도지사 이양		
3	○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의 구속력 확보	"	"
	○ 사후적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제 신설		

15) 참여연대의 금년 7월 여론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72.4%는 ‘SSM의 골목상권 진출규제’에 찬성했고, 74.5%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16) 이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코스트코의 의무휴업일 영업강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관부처에 건의한 사항이다.

연번	제 목 (내용)	소관부처	관련법령
4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사업 조정제도 실질적용	"	"
5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특별법
6	○ 중소기업인 점포 활성화기금 조성	중 기 중양회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7	○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 전지역 확대	지경부, 중기청	유통법
8	○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노동부	특별법
9	○ 백화점·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도 영업 제한대상에 포함	지경부, 중기청	유통법
10	○ 165㎡ 이상의 체인화 편의점을 SSM에 포함	"	"
11	○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인 경우 영업제한 자동 면제조항 삭제	"	"
12	○ 공개공지 등 영업장의 영업행위나 허위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13	○ 영업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¹⁶⁾ (예 : 과태료 상향,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도입)	"	"

위에서 말한 영업제한제도 등 다양한 이슈들은 개인·사회·국가의 가치관과 직결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단기적 편의나 기업의 단기적 이윤 등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의 상생과 사회통합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 갈 때 멀리,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대형유통기업 등 대기업의 자발적·적극적인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의지와 행동을 통해 모든 서울 시민, 나아가 전 국민이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¹⁷⁾’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고대해 본다.

17)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유통산업들이 독과점을 이루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되며, 당연히 물가도 상승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모두 국가와 소비자가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문화저널 21, '12.9.14).

※ 참고 : SSM 현황

1. 연도별 SSM 현황

(2012년 9월 현재)

구분	계	2006년 이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95	53	18	26	86	70	34	8
1	종로구	6	1		1	1	3	
2	중구	2	1			1		
3	용산구	6	1				3	1
4	성동구	11	1	3	1	1	4	1
5	광진구	9	2			3	2	2
6	동대문구	7	2			2	2	1
7	중랑구	6	1	2		2	1	
8	성북구	13	1			2	5	5
9	강북구	9	1	1	1	2	4	
10	도봉구	8	1	2	1	1	1	2
11	노원구	17	5		1	4	1	6
12	은평구	15	1	2		4	5	3
13	서대문구	10	2	1		4	1	2
14	마포구	5		1	1	2	1	
15	양천구	19	5	1	3	6	3	1
16	강서구	19	1		2	7	5	4
17	금천구	5			2	2	1	
18	구로구	7	1		1	3		2
19	영등포구	8	1	1	3	2	1	
20	동작구	14	2		1	6	4	1
21	관악구	7	2			2	2	1
22	서초구	19	6	1		6	6	
23	강남구	28	3		3	9	7	3
24	송파구	29	5	2	4	11	5	2
25	강동구	15	7	1	1	3	3	

2. 기업별 SSM 현황

(2012년 9월 현재)

자치구	계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GS	김스클럽	농협	굿모닝	에스엠
계	295	104	96	20	45	13	9	7	1
종로구	6	1	4		1				
중구	2	1	1						
용산구	6	5	1						
성동구	11	3	6		1		1		
광진구	9	3	4	1	1				
동대문구	7	4	1	1		1			
중랑구	6	2	3			1			
성북구	13	5	3	1	4				
강북구	9	3	1	1	2	1	1		
도봉구	8	4	1	1		1			1
노원구	17	8	4	1	4				
은평구	15	5	6	1	1		1	1	
서대문구	10	6	1		1			2	
마포구	5	3	2						
양천구	19	5	6		6	2			
강서구	19	8	6	3	1			1	
구로구	7	1	4	1		1			
금천구	5	2	3						
영등포구	8	1	5					2	
동작구	14	2	5	3	1	2	1		
관악구	7	2	2	1	2				
서초구	19	9	5	1	2	2			
강남구	29	10	10	2	4		2	1	
송파구	29	8	9	1	9	1	1		
강동구	15	3	3	1	5	1	2		

3. 대형마트 입점현황 (57개, 21개구)

(2012년 9월 현재)

구 분	계	업체명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김스클럽	하나로	아울렛
계	57	23	17	11	3	1	1	1
중 구	2	1		1				
용산구	1						1	
성동구	2	2						
광진구	2	1		1				
동대문구	2		1	1				
중랑구	6	2	3		1			
성북구	3	2	1					
강북구	1			1				
도봉구	3	1	1	1				
노원구	3	1	1	1				
은평구	2	2						
마포구	3	1	2					
양천구	1	1						
강서구	4	2	2					
구로구	4	2	1	1				
금천구	3		2	1				
영등포구	4	1	1	1	1			
서초구	3	1			1	1		
강남구	1	1						
송파구	3		1	2				
강동구	4	2	1					1

* 2012년 2월 1개 폐업(강서구 등촌동 678-14 그랜드백화점)

※ 대규모점포내 입점 대형마트 현황 : 6개

구 분	대규모점포 명	주 소	입점 대형마트
백화점	NC 백화점	강서구 등촌동 689	김스클럽마트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I'PARK 복합쇼핑센터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이 마 트
	김포Sky Park	강서구 방화동 886	롯데마트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이 마 트
	가든 파이프틀	송파구 문정동 292 외29필지	이 마 트
	홈플러스테스코(주)목동점	양천구 목1동919-7	홈플러스